

2021년도 제1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1. 5. 28.(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5건(안건번호 제2021-57629호~5770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순번52번은 증거물 확인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고, 순번 1번~51번, 53~80번 {☆☆☆☆☆☆☆☆' 사이트의 '[중점](영화)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020) [긴급]' 등 84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모두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 51번, 53~80번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입니다. 다만, 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순번 52번의 경우, 증거자료로 게시된 증거물 확인이 필요하여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입니다.

- C 위원: 제2021-57680호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각 가결 처리함이 상당합니다.

- D 위원: 순번 1번~80번 {☆☆☆☆☆☆☆☆' 사이트의 '[중점](영화)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020) [긴급]' 등 85건의 게시물}중 신고된 저작물과 심의대상 저작물이 불일치하는 제2021-5780호 안건을 제외한 모든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

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 위원: 순번 52번을 제외한 순번 1번~80번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순번 52번은 심의대상 저작물이 불일치하여 부결함.

2021년 제12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2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